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6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3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정을호 · 김준혁
강경숙 · 박성준 · 박균택
김 윤 · 박지원 · 김승원
황명선 · 신정훈 · 조계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식생활습관 및 식생활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,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,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조 등).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학생의”를 “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의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영양교육을”을 “영양·식생활교육을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95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식재료

제18조제1항 중 “운영의”를 “운영 및 영양·식생활교육의”로, “운영에”를 “운영 등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<u>학생의</u>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의</u> ----- ----- -----.
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<u>영양교육을</u>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	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양</u> <u>· 식생활교육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6조(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) 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(이하 “학교급식관계교직원”이라 한다)	제16조(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

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~ ④ (생 략) 제18조(학교급식 운영평가)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<u>운영의</u>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<u>운영</u>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95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식재료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8조(학교급식 운영평가) ① -- ----- ----<u>운영 및 영양·식생활교육</u>의----- -----<u>운영 등에</u>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